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청주지방법원 2015. 5. 14. 2015고합1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김동율(기소), 이재연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천문국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3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.

압수된 야바 20정(증 제1호), 야바 502정(증 제2호)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.

피고인들로부터 1,100,000원, 피고인 1로부터 1,066,666원을, 피고인 2로부터 300,000원을 각 추징한다.

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야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 및 향정)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